

바레인(Bahrain)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및 현행법 : 1976년(사회보험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
 - ※ 소득조사대상 급여가 특정 노령자, 장애인, 가족수당이 가능한 유족에게 지급됨

3 적용대상

- 당연적용
 - 최소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기관 또는 걸프 협력국 중 한 곳(쿠웨이트, 오만, 카타르, 사우디아라비아, 또는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)에서 근무 중인 바레인 국민
- 임의가입 : 자영자, 이전에 최소 5년의 의무 가입기간이 있는 자
- 적용제외
 - 가사근로자, 특정 농업근로자 집단, 임시근로자, 임시 외국인근로자, 법에 의해 규정된 대상
- 특별제도 : 공공부문 근로자

4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월 가입소득의 6%; 임의가입자는 월 신고소득의 15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상한 소득 : 4,000 디나르(dinars)
- 자영자
 - 월 가입소득의 15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소득은 자영자 가입시기에 따라 결정됨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하한 소득 : 200 디나르(dinars)
 - 자영자가 제도 가입 시 200 디나르(dinars) 이상의 월 소득으로 결정한 경우, 월 소득은 매년 5%씩 감소되지만 200 디나르(dinars) 이하로는 하향될 수 없음
 - 제도 가입 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상한 소득 : 2,000 디나르(dinars), 상한은 매년 5%씩 증가할 수 있지만 4,000 디나르(dinars)를 초과할 수 없음
- 사용자
 - 월 임금지급총액의 9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상한소득 : 4,000 디나르(dinars)

○ 정부 : 없음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급여

• 노령연금

- 최소 10년의 납부기간이 있는 60세(남성) 또는 55세(여성) 도달자
- 제도 가입 전 근로기간은 특정 조건 하에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
- 일상근로가 중지되어야 함. 연금 가입자는 월 소득의 합(연금 및 소득)이 최근 2년 간 월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한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 가능
- 연금보조금 : 노령연금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됨
- 조기연금 : 최소 20년(남성) 또는 15년(여성)의 납부기간을 있는 경우 연령관계없이 지급
- 연기보상 : 가입자가 40년 이상의 납부기간이 있는 경우 지급됨

• 노령청산금

- 10년 미만의 납부기간이 있는 60세(남성) 또는 55세(여성) 도달자
- 근로활동이 중지되어야 함
- 노령청산금은 가입자가 수감, 영구 이주, 자영자로 전환, 다른 제도의 연금 수급자격 획득, 기혼, 이혼, 유족 여성배우자 등 제도 가입 시 특정 상황에 있는 경우 지급 가능

○ 장애급여

• 장애연금

- 정년 미만이어야 하고 최소 6개월 간 지속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하며, 장애발생 전 연속 6개월간의 납부기간이 있거나 장애발생 전 연속 3개월을 포함한 12개월의 비연속적인 납부기간을 있어야 함. 보험료 납부를 중지한 후로 1년 이내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연금이 지급됨

• 장애청산금

- 정년 미만이어야 하고 최소 6개월 간 지속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하며, 장애연금의 최소 납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야 함

○ 유족급여

• 유족연금

- 사망자가 사망 시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할 자격이 있었던 경우 지급. 사망자가 보험료 납부를 중지한 이후 1년 이내로 사망했을 경우 연령 관계없이 연금이 지급됨
-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 : 미망인, 장애가 있는 홀아비, 고아(미혼인 딸; 22세까지의 아들, 학생은 26세까지 가능하며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), 사망자의 피부양부모, 형제자매
- 소득조사 : 고아의 소득이 유족연금액 이상인 경우 연금이 지급되지 않음
- 미망인, 딸, 또는 자매를 위한 유족연금은 (재)혼인 경우 중지되나 유족이 그 후에 이혼하거나 다시 미망인이 된다면 다시 지급 가능

- 연금 보조금 : 유족연금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됨
- 혼인수당 : (재)혼인 시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각각의 여성에게 지급됨. 수당은 한 번 1회로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에게 지급됨
- 미망인이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자인 배우자의 사망 후 재혼하거나 사망하는 경우, 또는 유족연금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지급 중지되는 경우, 연금은 그 다음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에게 법적 절차에 따라 재분배됨
- 유족청산금
 - 사망자가 사망 시 노령 또는 장애청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할 자격이 있었던 경우 지급
 -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 : 미망인, 장애가 있는 홀아비, 고아(미혼인 딸; 22세까지의 아들, 학생은 26세까지 가능하며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), 사망자의 피부양부모, 형제자매
- 사망보조금
 -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자 사망 시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에게 법적절차에 따라 지급
 -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 : 미망인, 장애가 있는 홀아비, 고아(미혼인 딸; 22세까지의 아들, 학생은 26세까지 가능하며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), 사망자의 피부양부모, 형제자매
- 장제비
 - 미망인, 사망자의 장남, 또는 장례식 비용을 지불한 자에게 지급됨
 - 특정 조건 하에 유족급여 지급가능

6

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
 - 가입자 최근 2년간의 납부기간에 대한 월 평균소득의 2%에 납부기간 연수를 곱한 금액이 지급됨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대 납부기간은 40년임 (가입자의 총 납부기간이 30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최대 5년까지의 인정된 납부기간이 연금액을 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가입자의 최근 2년간의 납부기간 동안 월 평균소득은 가입자의 연금을 인출하기 5년 전 월 소득의 150%를 초과해서는 안됨
 - 최저 월 노령연금은 최근 2년 동안의 납부기간 중 가입자 월 평균 기여 임금이거나 200 디나르(dinars)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함. 각 가족 구성원에 대한(연금수급자 포함) 최저 월 연금액은 35 디나르(dinars)임; 합한 총 금액은 가입자의 지난 2년 동안 평균 기여 임금을 초과해서는 안됨
 - 기여 임금은 가입자가 매해 1월에 지급받은 총 월 임금임
 - 월 최대 노령연금액(연금 보조금을 제외한)은 납부기간 중 최근 2년 동안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80%임
 - 연금보조금 : 노령연금의 10%가 지급됨. 10%의 추가금액 대신, 가입자는 납부기간 중 최근 2년 동안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의 3%에 가입기간 연수의 12배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음
 - 조기연금 : 45세 이전에 청구한 경우 연금액은 20%, 45~49세때 청구하는 경우 15%, 50~54세 때 청구하는 경우 10% 감액됨

- 연기보상 : 가입자 최근 2년 동안의 연평균 소득의 11%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40년을 초과한 납부기간의 각 연도에 대해 지급됨
- 급여조정 : 급여는 매 1월마다 3%씩 증가
- 노령청산금
 - <(가입자 납부기간 중 최근 2년 간 월 평균소득의 15% × 가입기간연수의 12배) + 보험료 납부 정지날짜부터 청산금이 지급되는 날짜까지의 발생하는 이자 5%>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
 - 장애발생 전 납부기간 중 최종 연도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의 44%, 또는 납부기간 중 최종 연도 가입자 평균소득의 2%에 가입기간연수 곱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지급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납부기간 중 최종 연도 가입자 평균소득은 장애가 발생하기 5년 전 가입자의 월 소득의 150%를 초과해서는 안 됨.
 - 월 최저 장애연금은 납부기간 중 최종 연도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44% 또는 200 디나르 (dinars) 중 더 큰 금액 지급
 - 월 최대 장애연금(연금보조금 제외)은 납부기간 중 최종 연도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80%임
 - 연금보조금 : 장애연금의 10%가 지급됨. 추가적인 10% 대신에, 연금수급자는 <납부기간 중 최종 연도의 월 평균소득의 3% × 가입기간 연수의 12배>의 금액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음
 - 급여조정 : 매 1월마다 급여는 3%씩 증가
- 장애청산금
 - <가입자 납부기간 중 최근 2년 동안 월 평균소득의 15% × 가입기간연수의 12배 + 보험료 납부 정지날짜부터 청산금이 지급되는 날짜까지 중 발생하는 이자 중 5%>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
 - 배우자연금 : 사망자가 수급했거나 수급할 자격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37.5%가 미망인(홀아비)에게 지급됨; 수급자격이 있는 고아가 없고 그 외의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이 있는 경우 62.5%; 수급자격이 있는 고아 및 그 외의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도 없는 경우 75%가 지급됨
 - 고아연금 : 사망자가 수급했거나 수급할 자격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50%가 가입자의 수급자격이 있는 각각의 자녀에게 동등하게 분배됨; 미망인(홀아비) 없고 그 외의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이 있는 경우 87.5%; 미망인(홀아비) 및 그 외의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100%가 지급됨
 - 그 외의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 : 사망자가 수급하거나 수급할 자격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12.5%가 피부양부모, 형제자매에게 균등 분배됨; 미망인(홀아비) 있으나 피부

양부모가 없는 경우 37.5%; 미망인(홀아비) 및 수급자격이 있는 고아가 없는 경우 62.5%가 지급됨

- 급여 산정을 위한 납부기간 중 최종 연도의 사망자 월 평균소득은 사망 전 5년 동안 가입자의 월 소득을 초과해서는 안됨
- 월 최저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납부기간 중 최종 연도 월 평균소득의 44%, 또는 200 디나르(dinars) 중 더 큰 금액을 지급. 각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최저 월 유족연금은 35 디나르(dinars)임
- 월 최대 유족연금(연금 보조금 제외)은 사망자 납부기간 중 최종 연도의 월 평균소득의 80%임
- 연금보조금 : 유족연금의 10%가 지급됨. 추가적인 10% 대신에, 연금수급자는 <납부기간 중 최종 연도의 월 평균소득의 3% × 가입기간 연수의 12배>의 금액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음
- 혼인수당 : 월 유족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
- 급여조정 : 매 1월마다 급여는 3%씩 증가
- 유족청산금
 - <가입자 납부기간 중 최근 2년 간 월 평균소득의 15% × 가입기간연수의 12배 + 보험료 납부 정지날짜부터 청산금이 지급되는 날짜까지 중 발생하는 이자 중 5%>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
- 사망수당 : 사망자 납부기간 최종 연도의 6개월 치의 월 평균 소득에 해당하는 일시금 또는 사망자가 수급하거나 수급할 자격이 있었던 노령 혹은 장애연금이 지급됨
- 장제비
 - 사망자 납부기간 최종 연도의 3개월분의 월 평균 소득에 해당하는 일시금 또는 사망자가 수급하거나 수급할 자격이 있었던 노령 혹은 장애연금이 지급됨
 - 최저 장제비 : 500 디나르(dinars)

7 관리운영기관

- 재무부(Ministry of Finance)
 - 전반적인 감독 제공
 - <https://www.mofne.gov.bh>
- 사회보험기관
 - 이사회에 의해 제도 관리 및 보험료 징수
 - <https://www.sio.gov.bh>

<2018년 ISSA 자료>